

세무뉴스

전자상거래 업계 기업 대상

제1부: 세무 및 관세 요건의 새로운 변화

2025년2월



인사말

존경하는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운영 방식과 다양한 참여 주체 덕분에 기업과 개인은 보다 손쉽게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온라인 거래의 감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위조 상품, 저품질 제품 및 세법 위반 행위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의 법률 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깊이 이해한 Deloitte Vietnam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기업들을 위해 업계 전문 뉴스레터 시리즈**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최신 법령과 규정을 종합하여 업데이트하고, 심층 분석 및 실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및 기업 파트너 여러분께 주요 사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법규 준수를 지원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Deloitte Vietnam은 수년간 연속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종합적인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고객이 효과적인 세무 관리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Deloitte Vietnam은 언제나 존경하는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inh Bui
Partner, Country Leader,
Tax & Legal
Deloitte Vietnam



Tuan Bui
Partner,
Tax & Legal
Deloitte Vietnam

주요 법령 문서

제 1 부 - 세무 및 관세 요건의 새로운 변화

-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과세 시행 주요 이정표
- 제56/2024/QH15호 법: 9개 법률 개정안,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 및 주요 변경 사항
- VAT 관련 신규 법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 제01/2025/QD-TTg호 결정 및 통관 관련 사항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정책 시행 주요 이정표

2021년9월

베트남 재무부는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을 발행하여 해외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체계를 도입했다.

2021년11월

베트남 재무부와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관리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제 2146/QĐ-BTC호 결정 및 제 1741/QĐ-TCT호 결정을 발행했다.

2022년 3월 ~ 7월

세무총국은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세무 당국에 직접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 포털을 공식적으로 개설했다.

2022년10월

베트남 총리는 제 889/CD-TTg 호 공문을 발행하여 2030년까지의 세제 개혁 전략 시행 및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2년8월

베트남 총리는 제 889/CD-TTg 호 공문을 발행하여, 2030년까지의 세제 개혁 전략 시행 및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3년5월

베트남 총리는 제 18/CT-TTg 호 지시를 발행하여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계 및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6월

세무총국은 제 2535/TCT-TTKT 호 공문을 발행하여 상업은행, 금융기관 및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의 결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2025 - 2026 계획

- **법인세법 초안:**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규정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령 초안:**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에서 VAT 세금계산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소득세법 초안:** 개인 사업자 및 가계 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2024년11월 - 2025년1월

제 48/2024/QH15 호 VAT 법: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제 01/2025/QĐ-TTg 호 결정: 특송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100만 동 이하의 상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정책 폐지

제 56/2024/QH15 호 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규정

상기 규정에 대한 Deloitte Vietnam의 최신 뉴스레터 및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website](#)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SIA-PACIFIC TAX AWARDS 2024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제56/2024/QH15호 법: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제56/2024/QH15호 법: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법, 세무 관리법, 개인소득세법, 국가 비축법, 행정 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아래는 제56/2024/QH15호 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로,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세무 규정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1 해외 공급자에 대한 요건 완비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는 베트남에서 세무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도입

- 이러한 의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관(결제 기능을 포함한 국내 및 해외 기관)과 정부 규정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에 적용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계 사업자 또는 개인 (“e-vendors”)이 원천징수 및 대납 세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판매자는 직접 세무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및 대납 세金的 범위, 책임, 신고 방식을 규정하는 세무 규정을 발행할 예정이며, 운영 기관 및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신고, 납부, 환급 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개정 및 보완 법률의 주요 사항

Deloitte의 관점

- 국가 관리 관점에서 보면, 예상되는 개정 규정은 가정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세금 회피를 최소화하며, 전체 사회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세 의무가 국내 및 국경 간 플랫폼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세 의무 및 책임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이 중요한 규정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개정 규정은 해외 공급자의 책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존 규정에서 은행/중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전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 해외 공급자가 직접 베트남에서 등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Deloitte는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안한다.

준비	적응	상담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는 베트남의 세금 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하여 신속하게 등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 관련 처벌을 피하고, 베트남에서의 사업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신속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및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규정 변경 사항을 면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세금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확하고 적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VAT법 개정: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VAT법 개정안은 제13/2008/QH12호 VAT법을 대체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 법 개정 사항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의 매출에 대한 VAT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VAT법 제13/2008/QH12호 및 그 개정안 및 시행 규정	VAT법 제48/2024/QH15호
<p>현행 VAT법 시행령 (제 209/2013/ND-CP 호) 제 2 조에 따름</p> <p>베트남 내 영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조직으로부터 서비스(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포함)를 구매하는 베트남 기업 또는 개인은 세금 납부 책임을 진다.</p>	<p>VAT법 제48/2024/QH15호 제4조에 따름 (납세 의무자 관련 규정)</p> <p>신규 VAT법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납세 의무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그룹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급자: 베트남 내 영구적 사업장이 없지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과 거래하는 기업. 해외 디지털 플랫폼 운영 조직: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관리하며,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는 조직. 베트남 내 기업 조직: VAT 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베트남 내 영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공급자의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외 조직으로, 플랫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계 및 개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결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p>재무부 회람 제219/2013/TT-BTC호 제15조에 따르면, 매입 VAT 공제 조건에 대한 지침</p> <p>현행 지침 및 일부 지방 세무당국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이 해외 공급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보이스는 매입 VAT 공제를 위한 유효한 VAT 인보이스로 인정되지 않는다.</p>	<p>신규 VAT법 제14조 2항에 따름</p> <p>해외 공급자가 베트남 세무 당국에 세금 납부를 등록하는 경우, 해외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 납부 증빙은 베트남 조직의 매입 VAT 공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p> <p>재무부는 해당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p>

VAT법 개정: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계속)

제13/2008/QH12호 VAT법 및 그 개정·보완 및 시행 규정	제48/2024/QH15호 VAT법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VAT법 지침	제48/2024/QH15호 VAT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VAT 세율이 10%로 규정됨
현재,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VAT를 매출에 적용되는 일정 비율(예: 5%, 3%, 2% 또는 면세)로 신고 및 납부한다. 이 비율은 매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내 영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B2B 또는 B2C 모델로 베트남 시장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국내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VAT 세율 이 적용된다.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VAT법 지침	제48/2024/QH15호 VAT법 제5조 25항은 VAT 면제 대상을 규정함
연간 매출이 100 mil VND 이상인 가계 사업 및 개인은 VAT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매출이 200 mil VND를 이상인 가계 사업 및 개인 은 VAT를 납부해야 한다.

Deloitte의 관점

- 신규 VAT법은 VAT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해외 및 국내 공급자에게 동일한 VAT 세율(즉, 면세/5%/10%)을 적용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세금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B2C 부문에서 해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 공급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격 전략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 B2B 부문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해외 공급자가 부과한 매입 VAT가 매출 VAT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해외 공급자는 향후 발표될 세금 서류 및 신고 요건에 대한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VAT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관리 정책의 향후 동향 무역 및 세관

현재 상황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현재 국제 특송 서비스 및 국내 운송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 활동은 현재 비교적 유연한 법적 틀 내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수입 및 수출 상품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가 상품에는 우대 정책이 적용되며, 상품 관리 규정에 대한 제한도 비교적 적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 속도는 관리 규정의 강화와 국가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 무역의 확대 및 베트남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습관 변화에 따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규제 변화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미래 전망

저가 상품의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에 대해 수입세가 적용될 예정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주문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의 국경 간 거래 증가로 인해 국가 세수 손실과 공정 경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호주 및 EU 회원국과 같은 국가들은 세수 증대와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해 저가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베트남 총리는 2025년 1월 3일부로 제01/2025/QĐ-TTg호 결정을 발효하여, 제78/2010/QĐ-TTg호 결정에서 규정한 1백만 VND 이하 상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정책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8일부터 모든 저가 상품에 대해 수입세 및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관리 정책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관련 기관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현재 전자 세관 시스템 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 개발, 이는 특송 물류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과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음.
- 특정 관리 대상 상품(예: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자 관리 강화.
- 특정 상품 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에 대한 제재 및 시정 조치 적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원 명확화.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Contact Us

우리는 항상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고객을 지원할 전문가 팀과 함께 파트너 및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팀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층적이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문의하시려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Ho Le Minh Nhat
Tax Director
nhatho@deloitte.com



Nguyen Hai Van
Tax Director
vanhnguyen@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
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